

공시송달 공고

『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』 제17조 및 동법제27조,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, 고지서,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아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 : 2020. 5. 6. ~ 2020. 5. 20.(15일간)
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: 붙임문서 참조

4. 유의사항

- 처분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단속에 이의가 있을 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, 공고기간 경과 후 본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3%, 증가산금 1.2%(60개월 동안) 매월 부과됩니다.
- 상기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(압류 등)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경로장애인과(☎041-840-8133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5월 4일

공 주 시

